의 안 번 호	<u>ই</u>	제	ই
의 경	결	20 .	
연월 약	실	(제	회)

의 결 사 항

군 인 복 지 기 본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해 감사와 국가차원에서 인정과 격려,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「군인 가족의 날」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령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(안 제16조 제 1항)
 - 1) 군인가족들은 군인의 직업적 특징으로 인해 교육, 의료, 복지의 사각지대인 전방에서 생활하거나, 군인이 격오지 · 접적부대 근무, 해외파병으로 인해 육아 전담 등을 홀로 이겨내거나,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가족 친지와 멀리 떨어져 살며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정과 격려가 필요함.
 - 2) 군인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군인 사기 증진 및 자부심을 통해 굳건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나. 군인 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시행 근거 마련(안 제16조 제2항)
- 다. 군인 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(안 제16조

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군인 가족의 날) ① 군인 가족이 겪는 고충과 애환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 前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(군인 가족의 날) ① 군인
	가족이 겪는 고충과 애환에 대
	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
	고,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
	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 前
	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
	<u>한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
	가족의 날 그 취지에 맞는 행사
	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	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
	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
	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				
연	락	처	(02) 748 - 5128	